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95 호

2003 년 1 월 24 일 금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5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지정고시)-----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6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고시)---- 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호(공사입찰공고(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전기공사))---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4호(구립보육시설(개나리어린이집)위탁운영자모집공고)---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호(물품매각재입찰공고)----- 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호(보상계획공고(만수동111-168
번지일원공영주차장건설공사))-----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7호(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8호(압류자동차공매공고)-----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호(공시송달공고(종합소득세할주
민세및특별징수주민세고지서))-----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0호(공시송달공고(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1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
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호(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호(재결신청공람공고(인천새말초등학교신축사업))-- 4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지정고시

인천광역시(도로:소3-1호선)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자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3. 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57-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3-1호선)
 - (2) 명 칭 : 고잔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3-1호선 : 폭원(B)=6m, 연장L=500m중 87.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홍 성 강
 -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4-3 삼성아파트 5/101호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3. 1. ~ 2003. 4. 30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1호선)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453-26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 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57-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3-1호선)
 - (2) 명 칭 : 고잔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3-1호선 : 폭원(B)=6m, 연장L=500m중 87.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홍 성 강
 -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4-3 삼성아파트 5/101호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3. 1. ~ 2003. 4. 30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첨」
8. 국토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9. 첨부 : 관계도서(개제 생략)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3-1호선) 개설공사

번 호	소 재 지		면 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	고잔	257-41	구	289	167	167	이길철	서울서대문구홍제동331 현대@104/603					
							홍성강	연수구 동춘동 924-3 삼성@ 5/101					
							김정웅	남구 관교동 13-7 쌍용@2/309					
							강혜영	연수구 동춘동 925-7 삼환@116/604					
2	고잔	257-42	잡	377	65	65	홍성강	연수구 동춘동 924-3 삼성@ 5/101			남동농협	남동구 민수동	
											협동조합	1014-1(논현지점)	
3	고잔	257-43	잡	377	79	79	이길철	서울서대문구홍제동331 현대@104/603			근저	남동구 민수동	
4	고잔	257-44	잡	377	80	80	이길철	서울서대문구홍제동331 현대@104/603			당권	남동구 민수동	
5	고잔	257-61	잡	77	77	77	강혜영	연수구 동춘동 925-7 삼환@116/604			지상	남동구 민수동	
6	고잔	257-62	구	2	2	2	강혜영	연수구 동춘동 925-7 삼환@116/604			권자	남동구 민수동	
7	고잔	760	잡	21.1	21.1	21.1	남동구						
계		7필지		1520.1	491.1	491.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공사
 - 공시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설계금액 : 236,462,000원 (관급 118,983,000원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3년 1월 22일(화) ~ 2월 3일(월) 오후 17: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2월 4일 (화) 11:00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 1. 22 ~ 2. 3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업체로서,
 -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로 제출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부 예규 제99호-2002.10.2)에 의한 시공경력 및 경영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2. 2. 11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설계금액중 관급액을 제외한 기초금액 (117,479,000)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정비과(453-266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 1. 21.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4호

구립보육시설(개나리어린이집)위탁운영자모집공고

남동구에서 보육시설취약지역의 아동복지(보육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립 보육시설(개나리어린이집)의 위탁관리 운영주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아

래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 적	정원	비고
개나리어린이집	만수동 29 주공④ 216/102	건물 88.81㎡(26평형)	14	

2. 위탁관리기간 : 2003. 3. 1. ~ 2005. 2월말

3. 신청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

4.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03. 1. 20 ~ 2. 3
- 현장설명회 개최 : 2003. 1. 29
- 신청접수기간 : 2003. 1. 30일 ~ 2. 6일 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 위탁시설현장설명회 : 2003. 1. 29 (수) 14:00 ~ 15:00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과 (☎453-2363)
- 제출서류
 -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 위탁신청업체 현황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경우)
 -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보육시설 운영 관련 서류

5.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남동구보육위원회의 심의후 결정

(대표자 또는 시설장 예정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설명 및 질의응답)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서류는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과(☎453-236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호

물품매각재입찰공고

1. 재입찰에 부치는사항

가. 매각대상 물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취득가격	취득연수	내구연한	비고
2320 -009	소형화물	와이드봉 고더블캡	대	1	7,734천원	'94.02.01	6년	요정 비품
2320 -009	소형화물	와이드봉 고더블캡	대	1	8,026천원	'94.09.23	6년	요정 비품
2320 -009	소형화물	와이드봉 고더블캡	대	1	7,734천원	'94.02.03	6년	요정 비품

나. 입찰마감일시 : 2003. 02. 03 17:00

입찰등록장소 : 남동구청 재무과

다. 입찰일시 : 2003. 02. 04. 14:00

입찰장소 : 남동구청 재무과

2. 입찰방법 : 일반공개입찰

3.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마감일까지 우리구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

4. 입찰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구청방문 작성).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입찰보증금지급 각 서 1부.

마.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인감증명(입찰참가신청위임장)을 첨부한 위임장

5.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예정가격이상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납부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지급각서로 가름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금고귀속사유

-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일내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국고귀속조치 합니다

8. 입찰의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로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현물인도 및 명의이전을 완료한다
- 마. 만일 위기일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구 일반회계에 귀속조치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응찰자는 물품을 반드시 현지장소(남동구청내)에서 확인하고 위 사항을 숙지하여 응찰하고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32-453-22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호

보상계획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만수동 111-16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시행규칙”제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만수동 111-16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규모 : 98㎡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168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03년 2월부터 예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금지급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정비과)
7. 보상대상 : 아래 지번상에 해당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만수동 111-168번지
8. 보상방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 체결후 현금 보상(계좌입금)
 -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 불가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3. 1. 22 ~ 2. 5
11.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정비과)
12. 기타사항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게시생략)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정비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7호

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관리처리에관한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를 무단점용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
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7(行政代執行의 適用特例)에 의거 대집행하고, 대집행시 수거
된 적치물을 동법시행령 제29조의5(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제2항에 의거 공고하
오니, 해당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자가 아래 공고기간내에 동시행령 제29조의6
에 의한 적치물 등의 반환을 요구할시 동법 제86조의2(過怠料)에 의거 과태료부과 후
반환토록 하겠으며, 아래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
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7(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에 의거 우리구에 귀속 처리할 것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년 1월 24일 ~ 2003년 2월 6일(14일간)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적치물의관리등) 2항]
2. 적치물 귀속 처리일 : 2003년 2월 6일 이후부터 3개월 경과 후
3. 적치물 귀속 처리내용 : 폐기처리
4.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상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8호

압류차량공매공고

지방세등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합니다.

1.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번호	공매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공매차수
	품명	제작자,규격,요량등	수량		
2003-1	인천31마4516	르망	1대	81,000	4차
2003-2	인천 5너6426	그레이스	1대	936,000	4차
2003-3	인천31나3784	아토스	1대	648,000	3차
2003-4	인천33마2369	복스타 R2	1대	450,000	2차
2003-5	인천31고1939	프린스2.0AT	1대	630,000	2차
2003-6	인천30머5763	그랜저	1대	3,000,000	1차
2003-7	인천 2러3310	에스페로1.5MT	1대	100,000	1차
2003-8	인천30다5828	로얄프린스2.0MT	1대	100,000	1차
2003-9	인천 1노8840	에스페로1.5MT	1대	100,000	1차
2003-10	인천 1노4116	엘란트라-오토	1대	500,000	1차
2003-11	인천30루1512	프린스1.8MT	1대	300,000	1차
2003-12	인천31머3854	코란도디젤-6	1대	800,000	1차

2. 공매장소 및 일시

가. 입찰 및 개찰장소 : 인터넷공매(<http://www.automart.co.kr>)

나. 입찰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 공고일 ~ 2003. 2. 6(목) 24:00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등록기간까지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참여마감 : 2003. 2. 7 (금) 14:00

(보증금 입금 후 입찰참여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마감 시까지 참여 가능)

라. 입찰결과 발표 : 2003. 2. 7(금) 오후 14:00

3. 공매방법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인터넷 공매 방식

☆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http://www.automart.co.kr>)

-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 선택차량은 한미은행 계좌(465-00095-258, 예금주 : 남동구청)에 본인명의로만

입찰보증금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입찰권한이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부자나 타인 명의로 입금시는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결재가 가능한 지역소재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반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액인 자 (입찰자가 1인이라도 유효합니다.)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매수대금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매수대금 완납 이전에 체납액이 납부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 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7. 공매중지

입찰 전까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공매처분의 착오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공매물건의 표시기준

공매물건의 표시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9. 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

공매물건이 인도에 대하여 우리구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물건소재지에서 원상태로 인도합니다.

10.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세징수법 및 압류관련 물건별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동구청(세무과, ☎453-2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3.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9호

공시송달공고

성 명 : 내역별첨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 종합소득세할주민세 및 특별징수주민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2002년11월종합소득세할주민세 및 특별징수주민세직권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납부를 2003. 2. 12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3.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시승달내역

연번	성명	주 소	세액	과세번호	비고
1	이정희	인천 남동구 만수동983-1상하a103-301	10,137,100	104004-200211-2-560-000011	수취임대거주
2	백운철	인천 남구 용현동 119 7/3	1,728,820 377,710	104004-200211-2-510-000104 104004-200212-2-510-000042	주소불명 주소불명
3	이병관	인천 남동구 만수동111-131아남빌라101	8,629,230	104004-200211-2-560-000017	수취임대거주
4	장훈구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292 약산빌라8-b01	952,970	104004-200211-2-530-000008	수취인부제
5	김창근	인천 남동구 간석3동 224-298	52,170	104004-200301-2-550-000021	수취인부제
6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40,390	104008-200301-2-520-000001	이사감
7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40,870	104008-200301-2-520-000002	이사감
8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41,390	104008-200301-2-520-000003	이사감
9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85,950	104008-200301-2-520-000004	이사감
10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128,980	104008-200301-2-520-000005	이사감
11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64,800	104008-200301-2-520-000006	이사감
12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37,480	104008-200301-2-520-000007	이사감
13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37,480	104008-200301-2-520-000008	이사감
14	남해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2동 4-58	37,480	104008-200301-2-520-000009	이사감
15	대길산업중기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86 구월빌딩 602호	160,760	104008-200301-2-510-000023	이사감
16	대영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79 성은빌딩 5층	41,450	104008-200301-2-551-000004	이사감
17	대영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79 성은빌딩 5층	41,450	104008-200301-2-551-000005	이사감
18	대영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79 성은빌딩 5층	41,450	104008-200301-2-551-000006	이사감
19	대영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79 성은빌딩 5층	41,450	104008-200301-2-551-000007	이사감
20	대영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79 성은빌딩 5층	12,580	104008-200301-2-551-000008	이사감
21	덕성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25,160	104008-200301-2-583-000002	이사감
22	덕성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62,740	104008-200301-2-583-000003	이사감
23	덕성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35,890	104008-200301-2-583-000004	이사감
24	덕성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49,790	104008-200301-2-583-000005	이사감
25	덕성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119,370	104008-200301-2-583-000006	이사감
26	덕성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208,210	104008-200301-2-583-000007	이사감
27	덕성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234,960	104008-200301-2-583-000008	이사감

연번	성명	주	소	세	액	과세번호	비고
28	덕성건영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238,890		104008-200301-2-583-000009	이사감
29	덕성건영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0 경방프라자 601호		161,890		104008-200301-2-583-000010	이사감
30	동우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74-27 고려빌딩 3층		19,316,580		104008-200301-2-560-000013	이사감
31	디아이씨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9-5 남동공단892 #		146,000		104008-200301-2-800-000150	수취인미거주
32	디아이씨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9-5 남동공단892 #		2,000		104008-200301-2-800-000151	수취인미거주
33	디아이씨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9-5 남동공단892 #		235,960		104008-200301-2-800-000152	수취인미거주
34	매스렐	인천 남동구 고진동 685-12 남동공단115B-13L		154,530		104008-200301-2-800-000015	이사감
35	매스렐	인천 남동구 고진동 685-12 남동공단115B-13L		33,490		104008-200301-2-800-000016	이사감
36	매스렐	인천 남동구 고진동 685-12 남동공단115B-13L		18,480		104008-200301-2-800-000017	이사감
37	매스렐	인천 남동구 고진동 685-12 남동공단115B-13L		203,080		104008-200301-2-800-000018	이사감
38	무진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29-4 한창빌딩 2층		629,840		104008-200301-2-583-000011	이사감
39	비전프리티	인천 남동구 고진동 736-2 남동공단162B4L		698,390		104008-200301-2-800-000101	수취인미거주
40	서강실업	인천 남동구 고진동 632-5 송민빌딩 303호		2,107,800		104008-200301-2-800-000099	이사감
41	서울환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4-25 3층		79,590		104008-200301-2-510-000036	이사감
42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2,910		104008-200301-2-800-000122	이사감
43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5,090		104008-200301-2-800-000123	이사감
44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5,090		104008-200301-2-800-000124	이사감
45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5,150		104008-200301-2-800-000125	이사감
46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5,150		104008-200301-2-800-000126	이사감
47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5,150		104008-200301-2-800-000127	이사감
48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5,150		104008-200301-2-800-000128	이사감
49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5,150		104008-200301-2-800-000129	이사감
50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91,170		104008-200301-2-800-000130	이사감
51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1,020		104008-200301-2-800-000131	이사감
52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1,020		104008-200301-2-800-000132	이사감
53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1,020		104008-200301-2-800-000133	이사감
54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1,020		104008-200301-2-800-000134	이사감
55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1,020		104008-200301-2-800-000135	이사감
56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1,020		104008-200301-2-800-000136	이사감
57	석원산기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7-1 남동공단29B-2L		31,020		104008-200301-2-800-000137	이사감
58	신화인터내셔널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67-5 영배B/D 303호		1,925,160		104008-200301-2-521-000005	이사감
59	아른텔레콤	인천 남동구 고진동 643-11 남동공단73BL-12LOT		18,190		104008-200301-2-800-000102	수취인미거주
60	에트빅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6-3 세정빌딩 301호		2,220		104008-200301-2-510-000007	방치반송

연번	성명	주 소	세액	과세번호	비고
61	에트빅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6-3 세정빌딩 301호	2,220	104008-200301-2-510-000008	방치반송
62	에트빅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6-3 세정빌딩 301호	32,970	104008-200301-2-510-000009	방치반송
63	오연자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	4,820	104008-200301-2-551-000001	주소불명
64	윙트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0-11	207,350	104008-200301-2-800-000009	이사감
65	우정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2동 69-72	10,380	104008-200301-2-520-000011	이사감
66	우신파이오니아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092-1	1,459,720	104008-200301-2-521-000006	이사감
67	유림특수화물	인천 남동구 노원동 428-6 남동공단20B-7L	321,380	104008-200301-2-800-000093	수취인미거주
68	피닉스기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8-6	1,117,640	104008-200301-2-800-000100	수취인미거주
69	한성산업개발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42-22	463,300	104008-200301-2-510-000022	이사감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0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94-56호('94.4.26)호로 지주지정 되고 인천광역시 공고제97-193호('97.6.19)호로 사업시행 인가되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내에 편입되는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에 보상 장소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의종류 :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3. 사업예정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 보상협의기간 : 2000. 11. 8 ~ 2003. 1.21
※ 공고기간내 협의보상 가능
5. 보상금산정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6. 보상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032-453-2662)
7.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시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보상장소로 문의

※ 공시송달 물건목록 : 불임.

2003. 1.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시송달목록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면적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서창동	343-12, 17	가구공장	496.5㎡	김세창	인천.남구 주안동 80 현대@ 2/702	인천시 남구청	인천시 남구 송의2동 131-1	
"	"	화장실	3.8㎡	"	"	남인천 세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	
						주식회사 제일상호 신용금고	인천 남구 도화동 444-14	
						강경안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26 한동빌라 303호	
						인천세무서	인천 동구 창영동 41	
서창동	343-12, 14	철단기	1대	박인식	인천.남동.만수동 946-8 석나 다세대 403호	임오철	인천.서구 금곡동 555	
		컴퓨터사	2대					
		집진기	1대					
		환풍기	4대					
		샤포기	1대					
		압송기	2대					
		제품 및 재료	1식					
		타카등 공고류	1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1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01.24~2003.02.23(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02.23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3)

2003. 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상액산정조서(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규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논현동	411-51	가옥(부녀회관)	브릭스레트	61.5	김종운	남동 논현동 411-48	
			가옥(노인회관)	브릭스레트	36.5			
2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77.97	유윤희	남동 논현동 산71	
			화장실	브릭스레트	1.5			
3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48.21	권영자	남동 논현동 산71	
			보일러실및욕실	브릭스레트	11.4			
			화장실	브릭스레트	4.5			
4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99.6	황근선	남동 논현동 산71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2. 제안사유

- 현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아 표창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짐
- 구청장이 수여할 수 있는 것은 훈장·포장이 아닌 표창이므로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수여하는 훈격에 맞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표창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포상 명칭을 전면 표창 명칭으로 조정
- 질서상 조항 삭제(제5조2)
- 모범공무원 포상 조항 삭제(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2003년 2월 3일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 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총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453-2155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총무과(인사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3년 1월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현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아 표창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짐
- 구청장이 수여할 수 있는 것은 훈장·포장이 아닌 표창이므로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수여하는 훈격에 맞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표창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포상 명칭을 전면 표창 명칭으로 조정
- 질서상 조항 삭제(제5조2)
- 모범공무원 포상 조항 삭제(제8조)

☐ 본 문

- “별첨참조”

☐ 참고사항

“해당없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양양에 숭선수범한 경우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국민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회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각급기관장 또는 실·과장·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각급기관장 또는 실·과장·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구공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의한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구공적심의회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공적심의회회는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구공적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공적심의회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한다.

제13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표창통제)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표창과 공무원의 표창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 자 (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군번(군인의 경우)							
								1								
(4)국적(외국인 에 한함)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이내)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

(별지 제5호서식)

표 창 대 장

호수	표 창 년월일	표 창 종 별	표 창 기 관	표 창 자				표창을 하계된 공적 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 고
				직위또 는직명	소속또 는주소	성 별	성 명			

(표창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표창의-----
제2조(포상대상)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표창의종류) ----- 표창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 2. ----- 3. -----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질서상)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일반구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 삭 제 〉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 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2의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삭제 > 제6조(감사장) ----- ----- 1. ----- 2. ----- 3. ----- 4. 국민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 1. ----- 2. ----- 3. ----- < 삭제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은 별지1호 서식 내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표창을 행할때에는 ----- -----

현행	개정 (안)
③제5조의2에 의한 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삭제〉
제10조(포상절차)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각급기관장 또는 실·과장·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공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 11조 1항으로 변경)	②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안 11조 2항으로 변경)	
④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각급단체,언론기관,반사회 및 구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구공적심의회에서 심사,산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⑤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안 10조로 변경)	
	제10(추서) 표창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①표창은 구공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에 의한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1조(구공적심의회)①구공적심의회는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u>포상권자가</u>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구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구공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구공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u>포상권자가</u>----- ----- ----- ②----- ----- ----- ----- ③----- ----- ④----- -----
제12조(포상시기)①<u>포상</u>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u>포상권자가</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u>포상권자가</u> 따로 <u>포상계획</u>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u>절서상</u>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3조(표창의 시기)①<u>표창</u>은----- -----<u>표창권자가</u>----- ----- ②<u>전항의 정기표창</u>은 <u>표창권자가</u>----- <u>표창계획</u>을----- ③ <삭 제>
13조(포상통제)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u>민간인의 포상</u>과 <u>공무원의 포상</u>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4조(표창통제) 표창의 ----- -----<u>민간인의 표창</u>과 -----<u>공무원의 표창</u>은 -----
제14조(이중포상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u>포상</u>할 수 없다.	제15조(이중표창금지) ----- 표창-----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u>포상</u>은 별지 제5호서식의 <u>포상대장</u>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 표창은 ----- -----<u>표창대장</u>-----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	삭 제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폐지규칙(안)

제출년월일 : 2003년 1월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포상운영규칙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모범공무원 상여금지급
과 타 표창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됨.
- 현재 모범공무원은 수당 및 부상, 산업시찰의 기회도 주어지고
있고, 타 표창은 부상만 수여되고 있어 모범공무원포상운영
규칙을 폐지하여 표창 운영의 내실화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모범공무원 선발 및 특혜(전면 삭제)
- 상여금 지급(전면 삭제)

☐ 본 문

☐ 참고사항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 ① (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 제 >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실·과장,보건소장,출장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17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삭 제 >
제3조(선발)모범공무원은 구공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24명 이내로 선발한다.	< 삭 제 >
제4조(인사상의 특혜)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의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삭 제 >

현행	개정(안)
제5조(상여금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의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삭제〉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될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남동구 및 남동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될 때	〈삭제〉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장이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인천새말초등학교”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3. 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학교시설사업“인천새말초등학교 신축사업“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정비과)
4. 열람기간 : 2003 1. 24 - 2003. 2. 7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면
신분은 도시정비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
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나. 용역금액 ○ 287,795,610원(부가세포함)
※ 폐기물반입수수료(수도권매립지) 7,958,500원은 계약시 계상함.
- 다. 용역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
※ 폐기물처리 19,685톤 [재활용 19,135톤, 매립 550톤]
- 라. 입찰등록 : 2003년 1월 25일(토) 09:00 ~ 2003년 2월 3일(월) 17:00
- 마. 입찰일자 : 2003년 2월 4일 14:00(화)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바.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년 1월 25일 09:00 ~ 2월 3일 17:00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 사.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주된사무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보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인천지역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해당분야 신고증 및 면허증 사본
-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자에 한함)
※ 인천광역시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 제출로 "가"항의 서류 갈음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본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제419호:2001.1.8)』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나. 본건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287,795,610원 임니다.
- 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pm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금액으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후 입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마.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입찰집행후 낙찰제한선 미만(예가대비 86.745%미만)투표자는 적격심사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5. 수행능력평가방법

- 가. 이행실적평가(15점)
 - 심사항목 : 최근3년내 용역계약실적
 - 평가요서 : 당해용역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 등급및 배점 : 1) 100%이상 15점
 - 2) 75%이상 ~ 100%미만 13.5점

- 3) 50%이상 ~ 75%미만 12점
- 4) 25%이상 ~ 50%미만 10.5점
- 5) 0%이상 ~ 25%미만 9점

나. 경영상태평가(15점)

심사항목 등급배점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00%미만 4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0%이상 4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2%이상 3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을 (매출액/총자본) 200%이상 4

6. 기타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단,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규칙 제44조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정비과(453-2692)에 문의하시기 바리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 1. 25.

인천광역시남동구도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3-1호

예방접종시행공고

전염병예방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3. 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예방접종 백신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접종기간
비씨지(B.C.G)	생후4주	피내주사:0.05ml	연 중
디프테리아 (Diphtheria) 백일해 파상풍	2,4,6개월 18개월추가 만4-6세추가	영아:대퇴부전외측0.5ml 소아: 삼각근부위0.5ml 근육주사	
소아마비	2,4,6개월 만4-6세추가	경구투여(0.2ml)	
B형간염	1,2,3개월또는 1,2,6개월	영아:대퇴부 전외측(0.5ml) 소아:삼각근부위(0.5ml)	
홍역 볼거리 풍진	12-15개월 만4-6세	피하주사(0.5ml)	
일본뇌염	12개월후2회 1년후1회 만6세추가 만12세추가	3세미만 근육주사0.5ml 3세이상 근육주사1.0ml	
인플루엔자	36개월 이후	근육주사0.5ml	10월-11월

